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안 낙 향 소유물건

[2025타경50267, (경매2계)]

NE2025-0116-0001

2025-02-24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봉찬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


전화:033)252-8338


전송:0505)182-4855



(토 지)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고 병 남  (인)

(주) 나 라 감 정 평 가 법 인 강 원 지 역 본 부
본 부 장 박 정 관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사천오백오십육만칠천칠백이십원정 (\45,567,720.-)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봉찬	감정평가 목 적	경매		
제출처	경매2계	기준가치	시 장 가 치		
소유자 또는 대상 업체명	안낙향 (2025타경50267)	감정평가 조 건	-		
목 록 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 02. 21	2025. 01. 16~ 2025. 02. 21	2025. 02. 24	

감 정 평 가 내 용	공 부(公 簿)(의 료)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 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2 142,296x-- 38	토지	7,489.26	-	45,567,720	
이		하	여	백		
합 계					\45,567,72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박 민 기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감정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걸운리 소재 '주봉초등학교'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춘천지방법원의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조건 없음.

4. 감정평가방법

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나. 본건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출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다. 본건 토지 기호(1, 2, 5~7) 지상에 소재하는 임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라. 본건 토지 기호(1~7)은 공유지분[기호(1, 2, 5, 7): 매각지분 갑구 4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각 전부, 기호(3, 4, 6): 매각지분 갑구 3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각 전부]에 대한 평가이나, 지분별 위치 특징이 곤란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본건 토지 기호(1, 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2개의 용도지역 [기호(1):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기호(2):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토지로서, 각 용도지역별 토지 단가를 산출한 후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에 따른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바. 본건 토지 기호(1, 2, 5~7)은 숲이 울폐한 임야로서, 분묘 여부 등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능한바, 업무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사. 본건 토지 기호(2)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분묘 6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며, 경매 업무 진행시 분묘의 정확한 경계 및 위치 등은 별도의 측량 등의 조치를 요함.

아. 본건 토지 기호(5)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2류)에 저촉하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자. 본건 토지 기호(2, 5) 중 일부는 목측 상 현황 구거 등 으로서,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5.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2월 21일자임.

6. 실지조사 •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지조사 착수일은 2025년 01월 16일자이고, 가격조사완료일은 2025년 02월 21일자로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본건 토지 기호(4)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는바, 경매 업무 취급시 참고 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13번지 외									
토 지	기호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 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1	산113	임야	22,810 x 2/38	자연림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1,800
	2	산123	임야	71,818 x 2/38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분묘 등	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	세로 (가)	부정형 급경사	2,680
	3	산123-1	구거	429 x 2/38	구거 등	보전관리 지역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1,120
	4	산123-2	구거	150 x 2/38	구거 등	보전관리 지역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1,120
	5	산124-1	임야	35,619 x 2/38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등	농림지역	소로 한면	부정형 급경사	2,520
	6	산124-3	임야	352 x 2/38	자연림	농림지역	소로 한면	부정형 급경사	2,700
	7	산125	임야	11,118 x 2/38	자연림	농림지역	소로 한면	부정형 급경사	2,650
	합 계				7,489.2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토지가액 산출

1. 공시지가기준 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나. 비교 표준지 선정

(1) 선정 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

(2) 표준지 공시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시기준일 : 2025. 01. 0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홍천읍 와동리 산59	임야	20,826	자연림	농림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2,180
#B	홍천읍 와동리 산120	임야	31,555	자연림	계획관리지역	세로 (가)	부정형 급경사	3,430
#C	화촌면 굴운리 산66	임야	7,736	자연림	보전관리지역	세로 (불)	사다리 완경사	2,350

(3) 비교 표준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 중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호 #A~C】 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5. 01. 01~25. 02. 21) (농림지역)
2025. 01. 01 ~ 2025. 01. 31 : 0.034
$(1 + 0.00034) * (1 + 0.00034 * 21/31)$
≒ 1.00057
※ 지가변동률 고시 기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2025년 02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 발표되어 2025년 01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지가변동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5. 01. 01~25. 02. 21) (계획관리지역)
2025. 01. 01 ~ 2025. 01. 31 : 0.070
$(1 + 0.00070) * (1 + 0.00070 * 21/31)$
≒ 1.00117
※ 지가변동률 고시 기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2025년 02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 발표되어 2025년 01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지가변동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5. 01. 01~25. 02. 21) (보전관리지역)
2025. 01. 01 ~ 2025. 01. 31 : 0.050
$(1 + 0.00050) * (1 + 0.00050 * 21/31)$
≒ 1.00084
※ 지가변동률 고시 기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2025년 02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 발표되어 2025년 01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
결정 의견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비교

기 호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농림)	0.80	0.90	1.01	1.00	0.727
1 (계획관리)	0.75	1.00	1.00	1.00	0.750
2 (보전관리)	1.30	1.10	1.00	0.99	1.416
2 (농림)	1.05	1.00	1.01	1.00	1.061
3	1.30	2.20	1.00	0.33	0.944
4	1.30	2.20	1.00	0.33	0.944
5	1.45	1.10	1.01	0.99	1.595
6	1.45	1.20	1.01	1.00	1.757
7	1.45	1.20	1.01	1.00	1.757
결정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1): 본건은 비교표준지(#A)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등) 및 자연조건(고저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공법상제한)에서 우세함. - 기호(1): 본건은 비교표준지(#B)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도로의 접면상태 등)에서 열세함. - 기호(2): 본건은 비교표준지(#C)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도로의 접면상태 등), 자연조건(고저 등)에서 우세하나, 기타조건(분묘소재)에서 열세함. - 기호(2): 본건은 비교표준지(#A)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등) 및 행정적조건(공법상제한)에서 우세함. - 기호(3, 4): 본건은 비교표준지(#C)와 비교시 접근조건(도로의 접면상태 등), 자연조건(고저 등)에서 우세하나, 기타조건(지목 및 이용상황)에서 열세함. - 기호(5): 본건은 비교표준지(#A)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도로의 접면상태 등), 자연조건(고저 등), 행정적조건(공법상제한)에서 우세하나, 기타조건(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 기호(6, 7): 본건은 비교표준지(#A)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도로의 접면상태 등), 자연조건(고저 등), 행정적조건(공법상제한)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 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2004. 0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2003. 07. 25. 선고 2002두5054 외)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 등과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가격자료

①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토지평가액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a	굴운리 산***_**	임야	18,957	농림지역	4,700	89,097,900	경매 23. 02. 17
#b	송정리 산**_*	임야	8,267	계획관리지역	5,200	42,988,400	경매 21. 01. 05
#c	군업리 산**_*	임야	33,807	보전관리지역	4,300	145,370,100	경매 21. 11. 25

※ 토지단가 = 토지평가액 / 토지면적

※ 출처: 감정평가정보체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번을 ‘*’ 처리하였음.

②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토지거래액 (원)	거래시점
#1	굴운리 산***_*	임야	6,601	농림지역	4,544	30,000,000	22. 09. 19
#2	장전평리 산***_*	임야	8,972	계획관리지역	7,802	70,000,000	21. 09. 27
#3	소매곡리 ***	임야	2,261	보전관리지역	5,307	12,000,000	21. 10. 05

※ 토지단가 = 거래가격 ÷ 토지면적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번을 ‘*’ 처리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표준지 가액과 사례기준 가액과의 격차

① 산식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 평가액}}{\text{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 \frac{\text{사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② 사례 선정

선정 사례	평가사례 #a~c
선정 의견	상기 인근 사례 중 비교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비교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음.

③ 표준지 #A-C 격차 산정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a	4,700	-	1.00996	1.00	0.800	3,797	1.741
#A	2,180	-	1.00057	-	-	2,181	
사정보정	별도의 사정개입 포착되지 않음.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농림지역) 2023.02.17 ~ 2025.02.21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0.80	1.00	1.00	1.00	0.800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a)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b	5,200	-	1.06428	1.00	1.650	9,132	2.659
#B	3,430	-	1.00117	-	-	3,434	
사정보정	별도의 사정개입 포착되지 않음.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획관리지역) 2021.01.05 ~ 2025.02.21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50	1.10	1.00	1.00	1.650		
비교표준지(#B)는 평가사례(#b)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도로의 접면상태 등) 및 자연조건(고저 등)에서 우세함.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c	4,300	-	1.01777	1.00	1.320	5,777	2.456
#C	2,350	-	1.00084	-	-	2,352	
사정보정	별도의 사정개입 포착되지 않음.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전관리지역) 2021.11.25 ~ 2025.02.21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20	1.10	1.00	1.00	1.320		
비교표준지(#C)는 평가사례(#c)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도로의 접면상태 등), 자연조건(고저 및 형상 등)에서 우세함.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1.74, #B: 2.65, #C: 2.45
결정 의견	상기에서 산정한 격차율과 본 건 인근의 지가수준, 거래 사례, 평가사례 및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74%(#A), 165%(#B), 145%(#C) 상향 보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 토지 시산가액 산정

(1) 토지 단가 산정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농림)	2,180	1.00057	1.00	0.727	1.74	2,759	3,200
1 (계획관리)	3,430	1.00117	1.00	0.750	2.65	6,825	
2 (보전관리)	2,350	1.00084	1.00	1.416	2.45	8,159	6,900
2 (농림)	2,180	1.00057	1.00	1.061	1.74	4,027	
3	2,350	1.00084	1.00	0.944	2.45	5,440	5,400
4	2,350	1.00084	1.00	0.944	2.45	5,440	5,400
5	2,180	1.00057	1.00	1.595	1.74	6,054	6,100
6	2,180	1.00057	1.00	1.757	1.74	6,668	6,700
7	2,180	1.00057	1.00	1.757	1.74	6,668	6,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고
1	1,200.53	3,200	3,841,690	평균단가
2	3,779.89	6,900	26,081,240	현황: 일부 구거 등, 평균단가, 분묘 소재
3	22.58	5,400	121,930	-
4	7.89	5,400	42,600	-
5	1,874.68	6,100	11,435,540	현황: 일부 구거 등
6	18.53	6,700	124,150	-
7	585.16	6,700	3,920,570	-
합계	7,489.26	-	45,567,720	-

※ 원단위로 절사하였음.

※ 안락향 지분 전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개요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사례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결정되는 가액임.

나. 거래사례 선정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토지거래액 (원)	거래시점
#1	굴운리 산***_*	임야	6,601	농림지역	4,544	30,000,000	22.09.19
#2	장전평리 산***_*	임야	8,972	계획관리지역	7,802	70,000,000	21.09.27
#3	소매곡리 ***	임야	2,261	보전관리지역	5,307	12,000,000	21.10.05

※ 토지단가 = 거래가격 ÷ 토지면적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번을 ‘*’ 처리하였음.

거 래 사 례 선 정 의 견	위 거래사례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 동일수급권내 소재하는 사례로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 등 본건과 비교 유사성이 높은 위 거래사례 #1~3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	--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치	1.00
결정 의견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라. 시점수정

구 분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농림지역	2022.09.19 - 2025.02.21	1.304	1.0130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획관리지역	2021.09.27 - 2025.02.21	4.389	1.0438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전관리지역	2021.10.05 - 2025.02.21	1.918	1.0191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지역요인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
결정 의견	동일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바. 개별요인비교

기 호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농림)	0.70	0.90	1.00	1.00	0.630
1 (계획관리)	0.85	1.00	1.02	1.00	0.867
2 (보전관리)	1.40	1.10	1.00	0.99	1.525
2 (농림)	0.90	1.00	1.00	1.00	0.900
3	1.40	2.20	1.00	0.33	1.016
4	1.40	2.20	1.00	0.33	1.016
5	1.25	1.10	1.00	0.99	1.361
6	1.25	1.20	1.00	1.00	1.500
7	1.25	1.20	1.00	1.00	1.500

결정 의견

- 기호(1): 본건은 거래사례(#1)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접면도로의 상태 등) 및 자연조건(고저 등)에서 열세함.
- 기호(1): 본건은 거래사례(#2)와 비교시 접근조건(접면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공법상제한)에서 우세함.
- 기호(2): 본건은 거래사례(#3)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접면도로의 상태 등) 및 자연조건(고저 등) 우세하나, 기타조건(분묘소재)에서 열세함.
- 기호(2): 본건은 거래사례(#1)와 비교시 접근조건(접면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 기호(3, 4): 본건은 거래사례(#3)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접면도로의 상태 등) 및 자연조건(고저 등)에서 우세하나, 기타조건(지목 및 이용상황)에서 열세함.
- 기호(5): 본건은 거래사례(#1)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접면도로의 상태 등) 및 자연조건(고저 등)에서 우세하나, 기타조건(이용상황)에서 열세함.
- 기호(6, 7): 본건은 거래사례(#1)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및 접면도로의 상태 등), 및 자연조건(고저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 토지 시산가액 산정

(1) 토지 단가 산정

기호	거래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농림)	4,544	1.00	1.01304	1.00	0.630	2,900	3,400
1 (계획관리)	7,802	1.00	1.04389	1.00	0.867	7,061	
2 (보전관리)	5,307	1.00	1.01918	1.00	1.525	8,248	7,000
2 (농림)	4,544	1.00	1.01304	1.00	0.900	4,143	
3	5,307	1.00	1.01918	1.00	1.016	5,495	5,500
4	5,307	1.00	1.01918	1.00	1.016	5,495	5,500
5	4,544	1.00	1.01304	1.00	1.361	6,265	6,300
6	4,544	1.00	1.01304	1.00	1.500	6,905	6,900
7	4,544	1.00	1.01304	1.00	1.500	6,905	6,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고
1	1,200.53	3,400	4,081,800	평균단가
2	3,779.89	7,000	26,459,230	현황: 일부 구거 등, 평균단가, 분묘 소재
3	22.58	5,500	124,190	-
4	7.89	5,500	43,390	-
5	1,874.68	6,300	11,810,480	현황: 일부 구거 등
6	18.53	6,900	127,850	-
7	585.16	6,900	4,037,600	-
합계	7,489.26	-	46,684,540	-

※ 원단위로 절사하였음.

※ 안락향 지분 전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토지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 의한 시산가액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토지	45,567,720	46,684,540	-

나. 토지가액의 결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지지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기호	면적(㎡)	단가(원/㎡)	토지가액(원)	비 고
1	1,200.53	3,200	3,841,690	평균단가
2	3,779.89	6,900	26,081,240	현황: 일부 구거 등, 평균단가, 분묘 소재
3	22.58	5,400	121,930	-
4	7.89	5,400	42,600	-
5	1,874.68	6,100	11,435,540	현황: 일부 구거 등
6	18.53	6,700	124,150	-
7	585.16	6,700	3,920,570	-
합계	7,489.26	-	45,567,720	-

※ 원단위로 절사하였음.

※ 안낙항 지분 전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면적 (㎡)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7,489.26	-	45,567,720	-
합 계			45,567,720	-

2. 결정 의견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또는 용도	용도지역 또는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 (원/㎡)	금액(원)	
1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13	임야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 22,810x-- 38	1,200.53	3,200	3,841,690	
		<매각지분 (갑	구 4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전부)>			
2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23	임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2 71,818x-- 38	3,779.89	6,900	26,081,240	현황: 일부 구거 등 분묘 소재
		<매각지분 (갑	구 4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전부)>			
3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23-1	구거	보전관리지역	2 429x-- 38	22.58	5,400	121,930	
		<매각지분 (갑	구 3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전부)>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또는 용도	용도지역 또는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 (원/㎡)	금액(원)	
4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23-2	구거	보전관리지역	2 150x-- 38	7.89	5,400	42,600	
		<매각지분 (갑	구 3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전부)>			
5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24-1	임야	농림지역	2 35,619x-- 38	1,874.68	6,100	11,435,540	현황: 일부 구거 등 소로 저축
		<매각지분 (갑	구 4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전부)>			
6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24-3	임야	농림지역	2 352x-- 38	18.53	6,700	124,150	
		<매각지분 (갑	구 3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전부)>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또는 용도	용도지역 또는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 (원/㎡)	금액(원)	
7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25	임야	농림지역	2 11,118x-- 38	585.16	6,700	3,920,570	
	합계		<매각지분 (갑구 4번 안락향 지분 38분의 2 전부)>				\45,567,720. -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소재 '주봉초등학교' 동측 원거리에 소재 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기호(2~4):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5~7):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2):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분묘 소재 등임.
 기호(3, 4): 부정형 완경사의 구거 등임.
 기호(5):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등임.
 기호(6, 7):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맹지임.
 기호(2): 본건 토지 서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기호(3, 4): 본건 토지 인근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함.
 기호(5):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접함.
 기호(6, 7):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접함.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홍천01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젓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젓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류(폭 8m-10m))(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젓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젓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본건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분묘 6기가 소재함.

기호(4): 본건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일부 '구거 및 분묘 소재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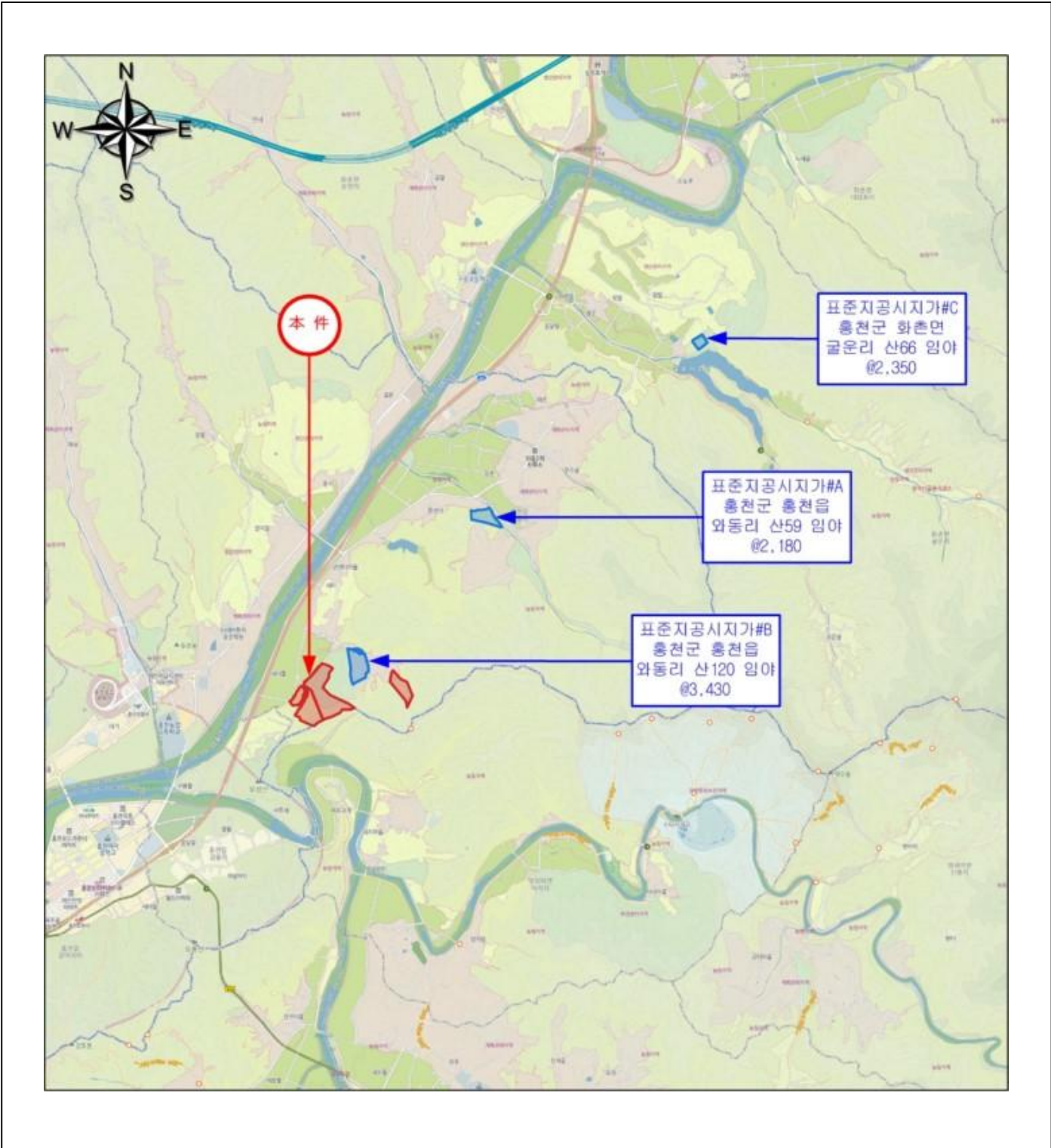
기호(5):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일부 '구거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위 치 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13번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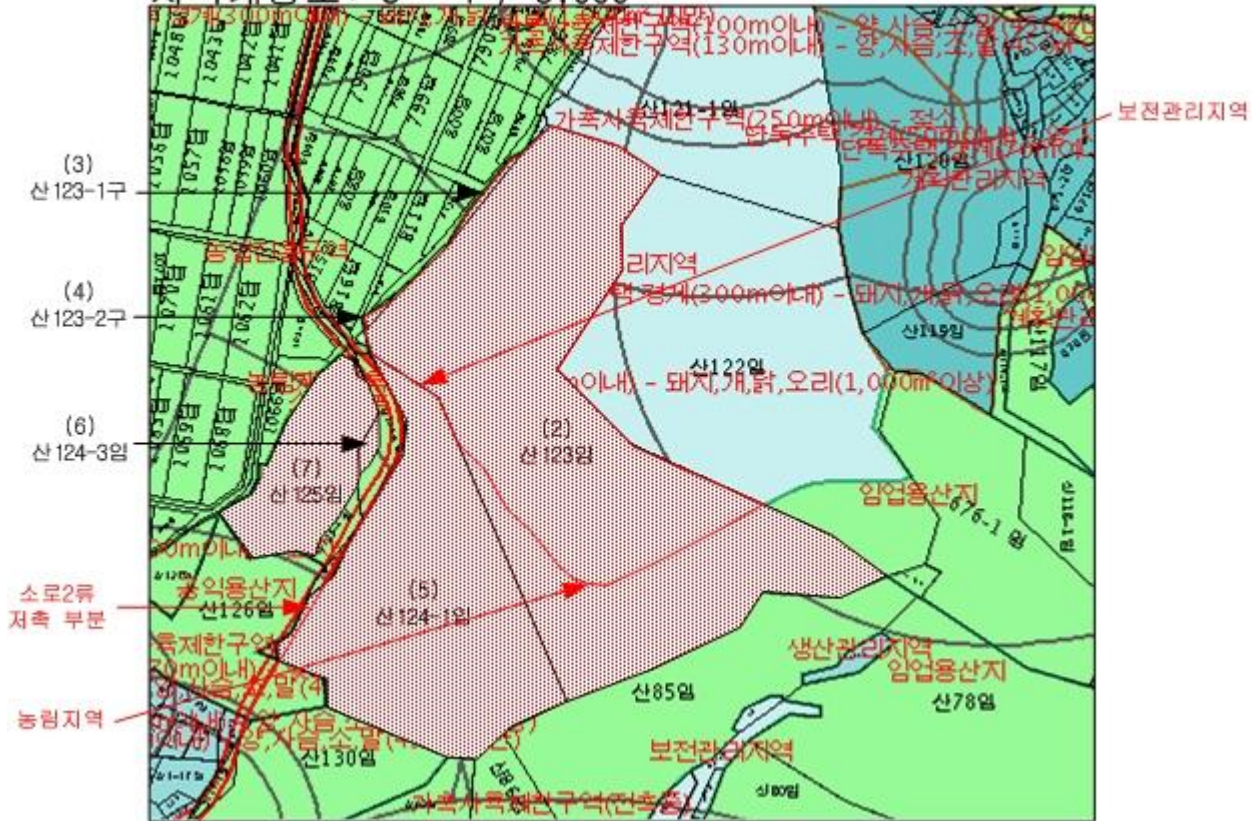


범례	■ 본건	■ 공시지가	■ 평가전례	■ 매매사례	■ 방매사례	■ 경락사례
----	---------------------------------------	--	---	--	---	---

지 적 개 황 도

SCALE : 1/6,000

지적개황도: S = 1 / 6,000



범례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1층		평가건물2층		평가건물3층이상
	제시외		평가제외건물		도로		계획도로선 용도지구분선

사 진 용 지



기호(1)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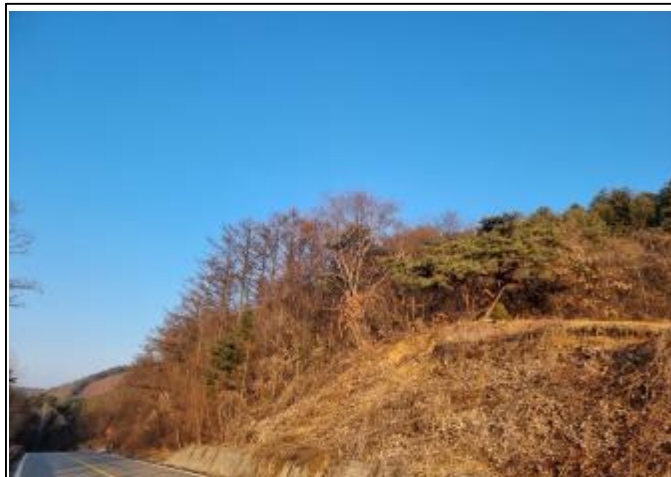
기호(2) 전경



기호(3) 전경



기호(4) 전경



기호(5) 전경



기호(6)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7) 전경



기호(2) 지상 소재 분묘 등



기호(2) 지상 소재 분묘 등



기호(2) 지상 소재 분묘 등



기호(2) 지상 소재 분묘 등



기호(4) 지상 소재 비닐하우스